

제1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2. 3. 16.(금) 10: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이계철 위 원 장

홍성규 부위원장

김충식 상임위원

신용섭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② 국민의례

③ 개회선언

④ 회의공개여부 결정

⑤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⑥ 의결사항

가.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재할당에 관한 건 - (2012-12-053)

- 양환정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12.3.29일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KT와 SK텔레콤(주)의 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 방안과 와이브로 정책방향(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재할당 관련

- (재할당여부) 심사결과, KT 및 SK텔레콤 모두 적격으로 판정되어 재할당 법인으로 선정

- (재할당 주요내용)

- ① 주파수 대역폭 : WiBro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주파수 이용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신청 대역폭 **전부 재할당**

·(KT) 2.3GHz대역 30MHz폭(2330~2360MHz), (SKT) 2.3GHz대역 27MHz폭(2300~2327MHz)

② 용도 및 기술방식

·용도 :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 제공' 이외에 '무선랜 중계' 추가

·기술방식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기술 중 OFDMA TDD WMAN(WiBro) 방식 또는 이후의 진화된 기술방식

③ 이용기간 : 7년

- ㉠ 재할당 대가 : 전파법시행령(제1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예상매출액의 1%를 일시에 부과하고, 실제매출액의 2%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부과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KT 193억원, SK텔레콤 173억원

※ '무선랜 중계' 활용에 대한 할당대가는 전파법령 및 고시 개정 후 추가 부과

㉡ (재할당 조건)

·(주파수이용계획서) 사업자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커버리지, 투자비 등 주요내용 성실 이행 및 점검

·(전파간섭대책) 인접대역에 전파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전파간섭 발생시 시설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

- (무선랜중계 할당대가) 휴대인터넷 외의 무선랜 중계에 대한 할당대가는 이에 관해 개정되는 전파법령 및 고시에 따라 다음 연도부터 납부
- (무선랜 공동 구축·이용) 무선트래픽 급증에 효율적 대응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자 간 협의를 거쳐 무선랜을 공동으로 구축·이용
- (제재조치) 재할당 조건을 미이행시에는 이용기간 단축 등 제재조치

< 이용기간 단축(안) >

- 중간(3년·5년) 점검결과 미이행시 : 이용기간 8개월씩 단축(할당대가 반환 없음)
- 이용기간 종료시점 점검결과 미이행시 : 재할당 거부 또는 일부대역 회수
- 자료제출(매년) 미이행시 : 이용기간 5개월씩 단축

② 와이브로 정책방향

- 추진전략 : LTE·WiBro 병행 발전

- ◆ 급증하는 3G·LTE 트래픽 분산 및 데이터 중심 서비스망으로 WiBro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
- ◆ 국내 원천기술인 WiBro의 기술경쟁력 유지·확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지원

- 세부 추진계획

- ㉠ (커버리지 확대) 지하철·주요 고속도로 등에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시내·광역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접근성 제고
- ㉡ (값싼 요금제 출시) 대용량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면서도 값싼 3G·LTE 결합 요금제와 WiBro 단독상품 요금 인하
- ㉢ (단말기 확대) 데이터 중심의 WiBro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노트북, 태블릿 PC, Wi-Fi 공유기(에그, 브릿지) 보급에 주력
- ㉣ (R&D) 국내 기업·연구소 등이 확보한 WiBro 기술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WiBro·LTE 공통 기술개발 지원
- ㉤ (사업모델 개발) 4G(WiBro, LTE) 시장에서 서비스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지원

o 향후계획

- '12. 3월 하순 : 주파수 재할당(조건 포함) 통지
- '12. 6월 : 전파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

나.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 - (주)인솔라인 등 10개 법인

- (2012-12-054)

-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의 보고를 받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10개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① 적격 법인 : 허가심사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7개 허가신청 법인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 법인으로 선정

- (주)인솔라인, (주)케이아이티, (주)대원유비맥스, 원아이테크(주), LS전선(주), (주)열림기술, TMKC(주)

※ 심사사항별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고, 총점 70점 이상을 받은 허가신청 법인을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

- ② 부적격 법인 : 3개 법인

㉞ 보고사항

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취약계층에 대한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적용 기준,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별정통신사업자의 손실분담 대상사업자 선정을 위한 매출액의 구체적 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주요내용

- ① '12. 2. 28. 개정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적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 (안 제4조)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 월 통화료 5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가입비와 기본료 면제, 통화료 150도수 감면

- ②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별정통신사업자는 '11회계년도부터 손실보전금을 분담하게 됨에 따라 분담사업자 선정을 위한 매출액 기준을 명확화 (안 제2조)

- 매출액 기준 : '별정통신매출액'에 '자가소비사업용수익'을 합한 금액

- ③ 요금감면 대상자 증명서 양식을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내용을 정비하는 등 기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안 제4조)

○ 향후 일정

-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 '12. 3. 16 ~ '12. 4. 5.
- 위원회 의결, 관보게재 및 시행 : '12. 4. 11 ~ '12. 4. 16.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누출 사고 발생시 통지 및 신고의 방법·절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의 외부 인터넷망 차단조치 등을 반영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주요내용

- ① 개인정보 누출 사고 발생시 통지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 신설
 - 개인정보 누출 사고 발생시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통위에 신고토록 함
-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의 외부 인터넷 망 차단조치 신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의 외부 인터넷 망 차단조치 의무화
- ③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조치 방법 신설
 - 3년 이상 서비스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파기하거나 다른 개인정보와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도록 함
- ④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대상·주기·방법 등 신설
 - 100만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연 1회 이상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내역을 통지하도록 의무화
- ⑤ 정보보호 사전점검 관련 규정 신설
 - 사전점검 권고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기준·방법·절차, 수수료 관련 규정을 신설함
- ⑥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 관련 규정의 삭제
 -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가 폐지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시행령상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함

⑦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 관련 규정 개정

-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인증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함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종전 정보보호 안전진단 대상자와 동일하게 함

⑧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 관련 규정 신설

- 정보보호 관리등급과 관련하여 등급 부여 심사의 기준, 방법·절차, 유효기간, 수수료, 등급 표시·홍보 규정 등을 신설함

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 관련 규정 신설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 관련 규정을 신설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규정을 준용

⑩ 개인정보침해 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구·검사 권한 중관소 위임 규정 신설

- 개인정보 침해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검사 권한을 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여 침해사고 발생시 조사 및 대응 체계 강화

○ 향후 일정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12. 3~5월
- 위원회 의결 : '12. 5월
-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 '12. 6~7월

6. 폐 회 (11:32)